

프랑스 방송법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08. 12. 31

요약

- I. 프랑스 방송법 개정 현황
 - II. 2008년 개정법(안)의 주요 특징
 - III. 시사점
- <부록>



요 약

■ 법 및 제도의 변화 과정

- 공·민영 체제의 구축 과정 : 프랑스 텔레비전은 1974년 커뮤니케이션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 방송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공영방송 중심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오늘날의 공·민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2000년 8월 2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개정법’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프랑스 공영방송 체제를 <지주회사(Holding)> 형태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을 설립할 것을 규정함.
- 디지털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통신 체제의 구축 : 2004년 7월 9일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법>을 제정하여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재 정의하고, 기술적, 산업적 활동을 재 영역화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 전자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플랫폼 및 이를 구성하는 장비, 그리고 방송 송출 시스템 및 전파 대역을 비롯하여 하드웨어적 부분으로 정의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써, 단말기 혹은 수신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규정함.
- 결국, 프랑스는 디지털 다채널, 다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 활동에 대한 공공 규제체제를 시청각 분야와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규제기구에 의해 다르게 적용하였음.
- 시청각 분야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공익성 실현이 그 중심에 있으며,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플랫폼의 공익성과 네트워크의 공익성 실현이 규제의 범위가 되고 있음.

■ 2008년 개정법(안)의 주요 특징

- 2008년 10월 사르코지 정부가 제시한 개정 법안 역시 프랑스의 방송 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CSA의 위상과 역할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점, 시청각 서비스(방송 서비스)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통신 및 융합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두 분야의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적 활동, 산업 영역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및 규제 시스템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이러한 입장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프랑스의 방송 정책이 내용적 측면(방송 콘텐츠 정책, 방송 철학, 공적 역할, 공적 규제 등)에서는 과거를 계승하면서 형식적 측면(공영방송 구조, 재원, 운영체계)을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법안이 제시하는 방송정책의 주요 방향 : 분산되어 있던 공영 방송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광고의 폐지가 주요 내용임.
 - 공영방송 개혁의 인식적 배경으로는 문화, 정보 그리고 프랑스 및 유럽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가 및 유럽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통합하고 전파하며, 계몽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송의 역할이 토대를 이루고 있음.
 -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혁안은 2008년 2월 19일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을 위한 위원회(la Commission pour la nouvelle télévision publique)’를 설치하고, 공영 텔레비전의 재 설립의 수준에서 <21세기 공공 텔레비전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이는 무엇보다도 여타 방송과는 다른 공영 방송의 차별성이 명확히 나타날 것과 글로벌 미디어로써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영방송의 통합 : 현재 프로그램 제작사들(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et RFO)로 구성된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십여개의 산하기업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체제를 통합함으로써 단일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광고의 폐지 : 공영방송에서 모든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상업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구축하고 차별성을 갖는 방송으로 거듭남. 광고 폐지에 따른 재원의 확충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 공영 방송의 경영 조직의 구조적 개편 :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 담당 방송사의 사장들에 대한 임명은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 : 시청각 최고회의)의 의견을 듣고, 문화 활동과 관련한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3/5이상 다수의 찬성이 있을 후, 대통령이 임명하고 포고에 의해 집행되도록 함.
- 방송 및 융합(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활동에 대한 세금 체제 : 세금 체제는 텔레비전 광고 수익과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을 구분하여 이원적 체제로 구축됨.
- 유럽연합 디렉티브의 적용 : 2007년 12월에 채택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디렉티브를 프랑스 법체계에 적용.
 - 특히, 디지털 쌍방향 방송의 발전에 따라 주문 및 선택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소비 유형들을 규정함.
 -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미디어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선정된 어떤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리고 개별적이 요구가 있을 때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함.

■ 프랑스 방송 개정법이 주는 의미

- 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성
 - 법 개정안에서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는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여전히 독립 규제 기구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전파 뿐 만 아니라

디지털 전파 이용한 모든 방송에 대한 규제권을 가지고 있음.

- 디지털 융합 시대에 방송의 공적 정체성 확립 : 디지털 개인 미디어 시대에 방송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사회 및 국가 공동체의 결속과 보전, 그리고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공공성의 중요한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을 통한 방송 서비스의 공적 정체성 : CSA가 허가권을 갖지 않는 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주문형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은 쾰세이유 데따의 포고(2003년 8월 1일 포고 제2003-764호)(Conseil d'Etat, 2003)에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CSA가 정한 방송규정을 준수해야 함.

○ 플랫폼 및 네트워크 공익성 : 플랫폼 및 네트워크 공익성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속하는 것임.

-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 électroniques et des postes)는 융합적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기구로써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code)>과 쾰세이유 데따(Le Conseil d'Etat)가 설립한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포고(décert)>에 준해서 그리고 CSA의 견해에 기초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송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규제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함.

- 이 원칙은 사업신고를 위한 준수사항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사업내역의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적용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액세스와 상호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재정적 조건들을 규정하며, 전파와 전파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

○ 플랫폼 및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위한 규제 원칙은 시장 및 산업 활동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업자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독점화 경향,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을 감시, 규제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를 감시 하고 경제 활동의 다양성을 보호 함.

- 이 규제는 서비스의 내용 및 콘텐츠들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미디어 다원주의를 보호하고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서비스들도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프랑스 방송법 개정의 현재적 의미

- 프랑스 방송법 개정안은 시장의 확대나 산업의 활성화 혹은 민영화보다 공영방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보여 주고 있음.

- 이것은 디지털 융합시대에 방송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다채널 융합방송 시대에 방송의 공적 기능 및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상과 사회 공동체의 공통이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보다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음.

I. 프랑스 방송법 개정 현황

■ 공민영 체제의 구축과정

- 프랑스 텔레비전은 1974년 커뮤니케이션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 방송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공영방송 중심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1984년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방송의 탈규제,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어 방송의 기본적 구조를 개편하기에 이르렀음. 1984년 Canal+가 민영 유료채널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1987년에는 TF1이 민영화 되고, M6가 개국하였음.
- 또한 정부의 영향 하에 벗어나지 못했던 방송규제기구인 CNCL(Commission National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és : 커뮤니케이션과 자유위원회)의 기능이 중단되고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 : 시청각최고위원회)가 비정부 독립 국가행정규제기구로써 설립되었으며, 이로써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 환경은 오늘날의 공민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 한편, 2000년 8월 2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개정법’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프랑스 공영방송 체제를 <지주회사(Holding)> 형태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을 설립할 것을 규정함.
 - 지주회사는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정책, 제작 및 송출 활동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며, 모든 공영 채널들의 자분을 관리하기 시작함.
 -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La société holding France Télévision)은 France 2

와 France 3 그리고 이와 별도 체제로 운영되었던 라 생끄엠(la Cinquième)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2004년 7월 해외 프랑스령 방송인 RFO(Réseau France Outre-mer)를 통합하고 2005년 3월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 France 4를 설립함으로써 현재의 공영방송 조직으로 확대, 강화됨.

- 이에 따라 프랑스 지상파 방송은 5개의 공영채널로 구성된 프랑스 텔레비전과 Canal+, M6, TF1 등 3개의 민영방송으로 구조화됨.

■ 디지털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통신 체제의 구축

- 프랑스는 2004년 7월 9일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법>을 제정하여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한 정책의 골격을 마련하였음.
-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들에 대해서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재 정의하고, 기술적, 산업적 활동을 재영역화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전자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플랫폼 및 이를 구성하는 장비, 그리고 방송 송출 시스템 및 전파 대역을 비롯하여 하드웨어적 부분으로 정의함.
 -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즉, 경마, 게임, 통신 그리고 은행업무 등을 ‘정보사회 서비스’로 규정함.
 - 정보사회 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활동은 시청각 서비스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탈법적 콘텐츠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독립적 규제기관이 규제하지 않고 사법 기관에 의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됨.
-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써, 단말기 혹은 수신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니케이션 활동으로 규정함.

- 송출 서비스의 본질이 공중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의 전송기술이나 수신기와는 상관없이 음향 및 영상 콘텐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 활동을 텔레비전 서비스 혹은 라디오 서비스를 시청각 서비스로 규정함.

- 이와 같이 텔레비전 및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정보사회의 서비스와 명확히 구별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결국, 프랑스는 디지털 다채널, 다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 활동에 대한 공공 규제체제를 시청각 분야와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규제기구에 의해 다르게 적용해 옴.

- 시청각 분야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공익성 실현이 그 중심에 있으며,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는 플랫폼의 공익성과 네트워크의 공익성 실현이 규제의 범위가 되고 있음.

II. 2008년 개정법(안)의 주요 특징

■ 법안의 연속성

○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의 방송법의 변화는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체제를 각 시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구조 개편으로 진행되어 왔음.

○ 2008년 10월 사르코지 우파 정부가 제시한 개정 법안 역시 그 역사적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즉, 기존의 방송 분야의 독립행정 규제기구인 CSA의 위상과 역할을 그대로 존

속시키고 있는 점,

- 공영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
- 시청각 서비스(방송 서비스)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통신 및 융합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획정함으로써 두 분야의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적 활동, 산업 영역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및 규제 시스템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 등.

- 이러한 입장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프랑스의 방송 정책이 내용적 측면(방송 콘텐츠 정책, 방송 철학, 공적 역할, 공적 규제 등)에서는 과거를 계승하면서 형식적 측면(공영방송 구조, 자원, 운영체계)을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법안이 제시하는 방송정책의 주요 방향

○ 공영방송의 개혁 취지

- 분산되어 있던 공영 방송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광고의 폐지가 주요 내용임.
- 공영방송 개혁의 인식적 배경으로는 문화, 정보 그리고 프랑스 및 유럽 시민의 식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가 및 유럽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통합하고 전파하며, 계몽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송의 역할이 토대를 이루고 있음.
-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혁안은 2008년 2월 19일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을 위한 위원회(la Commission pour la nouvelle télévision publique)’를 설치하고, 공영 텔레비전의 재 설립의 수준에서 <21세기 공공 텔레비전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이는 무엇보다도 여타 방송과는 다른 공영 방송의 차별성이 명확히 나타날 것과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영방송의 통합

- 현재 프로그램 제작사들(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et RFO)로 구성된 지주 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십여개의 산하 기업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체제를 통합함으로써 단일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영국의 BBC나 아랍 방송 알자지라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공영방송을 새롭게 탄생시킴.

○ 광고의 폐지

- 공영방송에서 모든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상업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구축하고 차별성을 갖는 방송으로 거듭남.
- 광고는 점차적으로 폐지되는데, 2009년 1월부터는 저녁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지방 방송을 제외하고 폐지됨.
- 광고 폐지에 따른 재원의 확충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수신료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소비자 물가를 고려하여 매년 국가 재정법에 의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영 방송의 경영 조직의 구조적 개편

- 2008년 7월 콩그레(Congrès : 상하양원 법제 총회)에서 채택된 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 담당 방송사의 사장들에 대한 임명은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 : 시청각 최고회의)의 의견을 듣고, 문화 활동과 관련한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3/5이상 다수의 찬성이 있는 후, 대통령이 임명하고, 포고에 의해 집행되도록 함.

- 이같은 개혁안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규제 기관인 CSA가 임명하던 공영 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이 개혁안은 국가가 공영방송의 재정을 책임지는 주주 이므로 당연히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 프랑스 사회는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CSA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회 해당 상임위의 찬성이라는 절차가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음.

■ 방송 및 융합(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활동에 대한 세금 체제

- 세금 체제는 텔레비전 광고 수익과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을 구분하여 이원적 체제로 구축됨.
- 텔레비전 광고 수익의 경우, 1천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각 텔레비전 서비스에서 광고 매출액의 3%의 규모로 함.
- 전자커뮤니이션 서비스의 경우, 전자 커뮤니케이션 운영자들이 할 기여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우편 규제 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 électroniques et des postes)에 사업 신고를 한 운영자들로부터 출원되는 세금으로, 년 매출액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매출액의 0.9%의 규모로 함.

■ 유럽연합 디렉티브의 적용

- 2007년 12월에 채택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디렉티브를 프랑스 법체계에 적용하는 내용임.
 - 특히, 디지털 쌍방향 방송의 발전에 따라 주문 및 선택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소비 유형들을 규정함.
 - 유럽연합 디렉티브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통칭 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미디어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선정된 어떤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리고 개별적이 요구가 있을 때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 함.
-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체제는 이 서비스들이 작품의 발전, 생산 및 창의성을 위해 기여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주문형 미디어 서비스는 융합적 활동에서 방송 콘텐츠 서비스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 역할과 그 규제 범위 그리고 조세의 실체를 규정하는 기준들을 제시해 주게 됨.

Ⅲ. 시사점

■ 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성

-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의 역할

- 법 개정안에서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는 여전히 독립 규제 기구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전파 뿐 만 아니라 디지털 전파 이용한 모든 방송에 대한 규제권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송 서비스 사업자 혹은 운영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조건과 재송신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규정하고 통제함.
-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기능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다수의 최종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규정하여 CSA가 규제함.

○ 공익성 확보를 위한 주요 규제 내용

- 다양성, 다원성의 원칙, 인간 기본권과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민주적 토론, 서로 다른 사회적 활동 영역 및 시민활동의 교류를 존중.
- 프랑스어의 발전과 문화 및 언어 유산을 가치화 하는데 기여.
- 사회적 화합과 문화적 다양성 보호.
-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 지적, 예술적 창작물의 확산 및 시민 교육 활성화 등.

○ 디지털 융합 시대에 방송의 공적 정체성 확립

- 이와 같은 규정들은 방송의 공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활동 기준으로 자리잡게 됨.
- 방송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사회 및 국가 공동체의 결속과 보건, 그리고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공공성의 중요한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을 통한 방송 서비스의 공적 정체성

- 한편, 케이블, 위성, ADSL에 의한 IPTV 그리고 모바일 방송 등 CSA가 허가권을 갖지 않는 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주문형 방송 서비스는 CSA와의 협약이나 서약을 해야함.

- 이때 사업자들은 콩세이유 데따의 포고(2003년 8월 1일 포고 제2003-764호)(Conseil d'Etat, 2003)에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CSA가 정한 규정 ① 최대 사업협정 기간 ② 프로그램 일반규칙 ③ 광고, 텔레쇼핑 및 후원 ④ 프랑스어 존중 ⑤ 영화 및 시청각 작품 방영 ⑥ 독립제작사 작품 보호 등을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자유에 관한 법에서 정한 방송규정을 준수해야함.

■ 플랫폼 및 네트워크 공익성

○ 플랫폼 및 네트워크 공익성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속하는 것임.

-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 électroniques et des postes)는 융합적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기구로써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code)>과 콩세이유 데따(le Conseil d'Etat)가 설립한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포고(décert)>에 준해서 그리고 CSA의 견해에 기초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송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규제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함.

- 이 원칙은 ① 사업신고를 위한 준수사항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사업내역의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적용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② 액세스와 상호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재정적 조건들을 규정하며, ③ 전파와 전파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

- 플랫폼 및 네트워크의 공익성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이 제시한 ‘보편적 서비스 (service universal)’(Union European, Directive 2002/22/EC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와 액세스(Access)(Union European,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에 근간하고 있음.

- 보편적 서비스 :

- 최종 이용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제한된 최소한의 서비스를 의미함. 따라서 최종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스럽지 못한 시장 환경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경쟁과 선택 행위를 통해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보편적 서비스는 최종 이용자의 권리를 확립하고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액세스 :

- 네트워크의 접속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원들, 서비스 제공자들의 접속에 관련한 것으로,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최종 이용자가 아닌 기업들에게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혹은 장치(방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액세스는 유용성, 특정 지역에서의 접근, 가격의 측면에서 공공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함.

- 먼저, 유용성 측면은 최종 이용자들에게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전화 통화, 팩시밀리 커뮤니케이션, 기능적 인터넷 접속을 포함 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특정 지역에서의 접근은 적어도 한개 업체가 일정 지역에서 공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임.

- 가격 측면은 사회적 실정에 따라 기업들이 원하는 요금 수준을 참고로 하여 최소한의 수입 기준과 특별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이 가격에 대한 큰 부담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플랫폼 및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위한 규제 원칙은 시장 및 산업 활동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업자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독점화 경향,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을 감시, 규제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를 감시 하고 경제 활동의 다양성을 보호함.
 - 이 규제는 서비스의 내용 및 콘텐츠들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미디어 다원주의를 보호하고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서비스들도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프랑스 방송법 개정의 현재적 의미

- 프랑스 텔레비전의 공공성은 프랑스 사회의 문화 지형과 미디어 지형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형성되었으며, 이들 두 지형이 상호 융합된 모습 속에서 방송의 공익성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시청각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공익성은 방송의 문화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한 규제 원칙들에 의해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의 공익성은 산업 및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 경쟁, 그리고 적정 가격에 소비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주 속에서 실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텔레비전의 공익성은 주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공적인 역할과 공적 프로그램 서비스가 주요한 부분 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와 더불어 기술적 공공성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또한 방송 서비스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정립 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서, 우리는 디지털 융합 기술에 따른 방송의 사유화가 확장되면 될수록 방송의 공적 영역과 공영 방송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더욱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는 한 도시에서 마치 사유지가 많아지고 확대 될수록 공원과 같은 공유지의 역할과 필요성과 더욱 높아지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일 것임.
- 프랑스 방송법 개정안은 시장의 확대나 산업의 활성화 혹은 민영화 보다 공영 방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목적성을 보여 주고 있음.
- 이것은 디지털 융합시대에 방송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다채널 융합방송 시대에 방송의 공적 기능 및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상과 사회 공동체의 공통이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보다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음.

<참고 문헌>

Projet de loi relatif a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audiovisuel(2008)

<부록>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및 새로운 공공 시청각 서비스에 관한 법안¹⁾

(Projet de loi relatif a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audiovisuel)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장관,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이 국무회의에 제출

2008년 10월 22일 수요일

1)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부 장관의 법제안 취지문

대통령 각하, 올해 초, 당신은 신년사에서 공영방송이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작업을 수행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당신은 공영 방송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elevisions)의 방송사들이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상업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했습니다. 동시에 시민을 계몽하고 또한 소비자를 유혹 해야 하는 텔레비전의 이러한 분열증적 증상에 종지부를 찍기를 희망했습니다.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을 위한 위원회(la commission pour la nouvelle television publique)의 결론을 지지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시청각 현실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보고하는 이 영광스런 법안은 수개월간 진행된 작업의 결과입니다.

제1부는 공공 시청각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이 법안은 프랑스 텔레비전의 공공서비스 활동 의무를 규정 한다 : 국가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가치들을 통합하고, 전파하며, 가르치고, 증진한다. 이 모든 의무들은 프랑스 텔레비전 사장의 취임 약정에 대한 응답인 책임 강령에서 매 장마다 세부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우리의 기대는 무수히 많으며 또한 명료하다. 특별히 그것은 문화, 정보, 프랑스 및 유럽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 법안은 가능한 이 거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랑스 텔레비전의 방송국들이 광고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중지 될 2009년 1월 5일부터, 2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지방 프로그램들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인들은 적어도 3개월 이내에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 진정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광고의 폐지는 국가의 재정적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

- 수신료는 2001년 이후 부터 이어져오는 사정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매년 자동적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 가격 기준표에 기초하여 그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다.

- 제 2부에서 두 종류의 세금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 하나는 텔레비전 채널들의 매출액에서 3%의 규모로, 다른 하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운영자들에 대해 0.9%의 규모로 세금 체제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해외에서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를 증진시키고 세계에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프랑스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새로운 해외 시청각 담당 방송사들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 시청각 기업들은 재조직 화 될 것이다 :

- 프랑스 텔레비전은 다양한 방송국들과 함께 단일한 기업이 될 것이다.

- 지난 7월 콩그레(Congrès : 상하양원 법제 총회)에서 채택된 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 담당 방송사의 사장들에 대한 임명은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 : 시청각 최고회의)의 입장을 청취한 후, 그리고 문화 활동과 관련한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3/5이상 다수의 찬성이 있을 후, 포고를 통해서 실행될 것이다. 또한 이 개정은 오늘 제출한 자료를 첨부한 조직에 관한 법 안이 핵심 사항이다. 새로운 임명 형식은 단지 현행 임기에서 만 효력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임기의 정지 형식은 동일한 과정에 따라서 법의 공포를 통해서 실행될 것이다.

제3부는 2007년 12월에 적용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디렉티브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3부는 오늘날 주문형 비디오나 선택형 텔레비전과 같은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

비스로 통칭 하는 것으로, 전통적 텔레비전을 보완하는 시청각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소비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체제는 이 서비스들이 작품의 발전, 생산 및 창의성을 위해 기여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오디오 편집(audiodescription)으로 불리는 기술에 의해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 : 곧 CSA가 수립하고 명시할 형식에 따라 만들어진 생산물들의 실체에 대한 허가, 그리고 영화와 텔레비전 픽션물들 속에 짧은 단파 광고 삽입의 가능성.

제4부는 정부가 1956년 이후 부터 전혀 변화가 없었던 CNC(CNC : Le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의 운영과 영화법규를 ‘명령(ordonnances)’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의 텔레비전에 대해 우리의 법 및 규제 틀을 적용시키기 위한 보다 총체적인 개혁의 핵심 고리이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의 출현과 더불어 최근 몇 년 동안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온 총체적인 시청각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시청각 창작 및 생산에 있어서의 재정 문제를 심도 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 :

- 시청각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타스카(Tasca)라 불리는 포고(décret)들에 의해 2001년 이후에 진행된 규제들로 이루어진 이 규제체제는 무기력하고 시청각 생산을 가로 막았다. 나는 이 포고들의 엄격성 대신에 거대 기업들에게 투자에 대한 댓가를 돌려 줄 수 있고, 픽션이나 다큐멘터리처럼, 전통유산 작품 생산을 꿈쩍 못하게 하면서 채널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속박들을 낮추는 사업적 관점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

- 각 채널들은 1992년 포고의 무력화를 통해 텔레비전에서의 광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무엇보다도 광고주들에게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 광고주들이 창의적 활동의 기본적인 재정 후원자들이 될 때, 모든 시청각 분야들이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광고는 우리의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영역 중의 하나이다.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방영하면서 우리는 경제적 성장에 긍정적인 조건들을 창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 각하, 오늘 내가 영예롭게 당신에게 제출하는 시청각 분야에 관한 이 법안은 지난 20년 이래 가장 중요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급진적 변화의 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중국 가서, 공공 시청각 서비스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창작활동의 재정 상황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면서 채널들에게 보다 유연함과 자유를 제공하면서, 이 법안은 새로운 시청각의 모습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법체계를 심도 깊게 현대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상원에 제출할 법 <창작과 인터넷(Creation et Internet)>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제1부에서 창작활동가와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기술적 진보에 중을 최고의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텔레비전 서비스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안²⁾

■ 법안의 동기에 관한 설명

법안은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 다양한 활동과 함께 사회의 동맥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도 정보와 토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텔레비전 ; 모든 장르를 다루면서 각기 다른 방송사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한 안내 표지가 집합 하고 또 그 곳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텔레비전 ; 그 초기에 유리한 성공에 이르지 못할 지라도 도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주고, 그것에 성과가 달린 텔레비전 ; 창의적 작업자와 관객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텔레비전 ; 어떠한 지루함도 없이 흥미를 주고, 저속함 없이 재미있으며, 획일적이지 않고 비교될 만한 한 텔레비전, 그리고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지적이고 호기심이 충만한 텔레비전 ; <거대 대중>을 위하고 언제나 신뢰성이 있으며, 높은 사명을 가진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텔레비전.

이러한 집단적 열정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 텔레비전은 더 이상 재정의 일부를 광고 재원, 즉 시청률의 절대성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물론, 시청자와의 결속과 흥미로 귀결되는 공중은 잘 파악 될 것 이며, 그렇지만 프로그램 마다가 아니라 종합적인 방식으로, 주간 단위로, 월 단위로 관측이 될 것이다. 안전하고 항구적인 공적 재원만이 프랑스 텔레비전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보호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이것이 실재하는 차이 이다. 이 차이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텔레비전 그룹의 책임 강령과 채택한 약속은 되풀이 될 것이다.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은 무엇보다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도달되

2)법안 제안의 동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는 텔레비전이다. 광고는 프로그램 선정 기준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의 각 부분들을 단절시킨다. 새로운 공공 시청각 활동은 서로 다른 사회와 서로 다른 세대를 넘어서는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모든 방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공공 시청각은 양질의 오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모든 스포츠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방송을 할 것이다. 공공 시청각은 또한 특별히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을 약속하고 새로운 텔레비전 신화를 개척해 갈 것이다.

문화는 공영 텔레비전에 있어서는 하나의 도전이다. 엘리트적 특권도, 야행성 인간들의 특권도 아닌, 이 문화는 모두에게 전달할 필요성과 함께 주요 시청시간에 프로그램 편성을 풍요롭게 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전통 유산은 상송처럼 프랑스의 열정이다. 공영 텔레비전은 화면에서 그 열정을 나타내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공영 텔레비전은 시청자들을 연극장으로, 오페라로 인도해야 한다. 영화에 대해 전율이 나도록 만들고 독서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 두가지는 우리의 문화 유산을 적용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다. 프랑스 시청각 창작에 대한 제1의 투자자로서 프랑스 텔레비전은 픽션, 다큐멘터리, 만화 영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 선택은 방송시간 동안에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다.

공영 텔레비전의 역할은 또한 사회의 중요한 사건들을 명확히 밝히는데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세계에 대해 열려진 창으로써, 공영 텔레비전은 다원주의와 독립성의 모델에 되어야 한다. 공영 텔레비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굳건하며 또한 모든 의견들을 존중하면서도 대립되는 다양한 생각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공영 방송은 과학적 신비들을 벗겨내고 역사의 흐름을 통찰하는 활동에 시청자들을 초대할 것이다. 공영 텔레비전은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게 모든 신념들의 표출을 수용할 것이다. 즉,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은 시청자들에게 포럼에서 논쟁을 하고, 주제들을 심도 깊게 관찰 하며 추가적 정보들을 발견하고, 도약의 기회를 주면서 그들과 보다 견고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인터넷의 발전이 주는 이점을 활용할 것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프랑스적 시민성과 유럽의 시민성을 자극할 것이다. 일상에서 유

럽을 보도록 하고, 우리의 활동 속에서 우리 이웃의 활동을 결합시키고, 또한 유럽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강화시키도록 하면서, 이 모든 모험에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열정, 이것들은 책임 강령 속에 각인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명으로써, 공영 텔레비전의 또 다른 위대한 도전인 것이다.

결국, 시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비판 정신을 키우기 위해 공영 텔레비전은 그에 적합한 치유제를 만들어내야 하며, 인터넷의 출현으로 매일매일 생산되는 정보와 이미지들의 흐름 속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 특히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것은 스스로 사유하기 위한 열쇠들을 공적 시청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송을 전제로 한다.

결속을 이루어내고, 감성을 주고,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공공 서비스 정신의 출발이다. 공공 서비스는 세계에 대하여 보다 잘 조명하고 다양성 속에서 시민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송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법의 정신과 장점을 공영 텔레비전에게 제공할 것이다.

2008년 2월 19일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을 위한 위원회(la Commission pour la nouvelle télévision publique)’를 설치하면서 대통령은 위원회가 가져야 할 사명과 추진 할 공영 텔레비전의 개혁 목적을 명시하였다 : 이것은 새로운 개혁 그 이상으로 공영 텔레비전의 재 설립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은 공영 텔레비전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고 다원주의에 기여하는 방송으로써 <21세기 공공 텔레비전 서비스를 개발해 내는 것> 과 관련이 있다. 다원주의에 기여한다는 것, 이것은 또한 공영 텔레비전의 새로운 정체성의 기본이며, 사영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공급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이익의 수혜자가 되도록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 텔레비전의 역할은 또한 사회적 역할이다.

이러한 제작 열정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사실은 공영 텔레비전이 더 이상 매일 매일의 시청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방송이 폐지될 때까지는 20시 이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시간에 광고를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공영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제작 활동에 가장 엄청난 자유를 돌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이 출현한 공공 서비스의 핵심은 그 콘텐츠들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영 텔레비

전의 규약이라 할 수 있는 공영 텔레비전의 새로운 책임 강령 및 윤리 강령은 공영 텔레비전의 사명을 명시한 기초와 틀을 구성할 것이다. 활동 방향은 3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즉,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세계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활동 그리고 시청각의 창의력을 위한 활동 등 이다.

공영 텔레비전은 대중문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문화는 매일같이 그리고 매 순간, 모든 프로그램 장르에서 문화 프로그램들의 전통적인 대중을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들의 프로그램 편성을 풍요롭게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매일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들 중 하나에는 매 저녁 첫 시간대에 문화 관련 방송을 프로그램화 할 것이다. 즉, 독서와 문학, 문화 메거진, 건축, 조형예술, 고전 음악, 시청각 픽션물이나 영화 픽션물이 문화 콘텐츠로서 방영되고 예술가와 작가를 소개하는 방송이 방영될 것이다.

텔레비전이 가장 많은 사람을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자인 국가에 의해 정해진 희망찬 산술적 목표들을 고려함으로써, 공연(오페라, 연극, 무용, 콘서트 및 페스티벌의 재 방영, 행사 영상 등)이 France 2, France 3 et France 4 상에서 우선적으로 방영될 것이다.

특별히 음악과 관련해서, 프랑스 텔레비전은 고전, 전통, 현대 음악 등 모든 형식의 음악들에 대하여 대중의 인식과 감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채널들의 접근을 보안하고 다양한 형식들의 다양한 음악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편성 중에서 보다 의미 있는 부분은 프랑스 상송과 프랑스 어권 상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또한 활동의 다양성 속에서 영화 생산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공영 텔레비전은 수준 높은 종합적인 시청각의 위상을 정립하고,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현실의 세계를 바로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여 하는 텔레비전이 되어야 한다.

지적이고 탐사적 프로그램들이 가장 시청자가 많은 시간대에 다양한 모습(메거진,
.....

다큐멘터리, 픽션 및 단막 프로그램 등)으로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방영될 것이다. 이것들은 특히 과학과 역사를 일반화 할 것이며, 환경과 개발의 문제들에 경각심을 심어 줄 것이다. 특별히 주목할 사항은 학교 교육을 반영하여 교과 분야들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직장생활과 고용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으로 실재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직업 및 경제적 활동을 주요하게 다룬 프로그램의 방영은 France 5에서 이루어 졌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러한 방송은 프랑스 텔레비전의 모든 채널들에서 시행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은 유럽의 정체성을 부흥시키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유럽적 영역은 그 기능에 대한 이해 및 모든 대중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럽내의 차이들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프랑스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 기획 속에 결국 통합 될 것이다.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영역으로써 정보와 토론은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에서 항시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많은 주간 프로그램들이 저녁시간에 특히 France 2와 France 3를 통해서 프랑스 및 유럽의 정치 토론과 정보들을 제공 될 것이다.

점점 더 다양화되고 경쟁적으로 되어가는 시청각 세계 속에서, 21세기 공영 텔레비전은 마찬가지로 위협을 인지하고 감수 할 수 있어야 하며, 대담한 프로그램 전략을 구사해야한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프랑스 시청각 창작에 대한 제1의 투자가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특별히 프랑스 문학 유산을 응용하고, 프랑스 및 유럽의 역사를 묘사하고, 현대 사회의 진화를 추적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영 텔레비전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에 부합하는 내용을 위해 장르의 혁신, 형식의 다양성, 새로운 시나리오의 개발, 새로운 재능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이 특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방송 기간 동안에 적어도 프랑스 텔레비전에 의해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70%는 유럽 원작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50%는 프랑스 원작이어

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규제 체제는 단지 유럽 원작 60%, 그 중 프랑스 원작 40% 쿼터를 프랑스 텔레비전에 요구 한다.

이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은 모든 대중의 텔레비전이 되어야한다. 이것은 공영 텔레비전의 사회적 역할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각각의 채널이 적합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 만큼이나 채널들 사이의 연계성을 수립하고 새로운 망(고정 혹은 유동 인터넷 등) 상에서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France 2는 전적으로 유럽 및 국제 문제를 밝혀내는 일에 집중하고, 중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담당하는 일반 채널로 남을 것이다. 또한 정보 프로그램들과 창작 프로그램들(픽션, 다큐멘터리, 만화 등)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게임, 스포츠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France 3는 지역, 문화유산, 환경에 관한 채널 그리고 일상과 가까운 프로그램 채널이 될 것이다. France 4는 양질의 문화와 오락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청소년 및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채널이 될 것이다. France 5는 지식과 인식에 관한 채널이 될 것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이 모든 연령대를 위해 프로그램의 폭넓은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고, 프랑스 만화 프로그램 생산을 촉진시키면서 청소년 지도를 위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다.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들은 학교의 교육 일정과 균형을 맞추면서 그리고 지적 활동을 특화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들을 토요일 아침에 방영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어린이의 성장과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지 뿐 만 아니라 좋은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을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의욕적 서비스에서, 프로그램 만족에 대한 측정은 시청자의 질적 측정 방식에 의해 보완 된 양적 측정 방식으로 실행 될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추출이 이미지, 질, 공공 서비스 활동으로써의 적합성, 프로그램 가격 그리고 시청자 등에 기준을 둔 통합적인 분석들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공영방송의 재설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영 텔레비전은 프로그램에 광고를

삽입함에 따른 상업화에 기인하는 시청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공 서비스에서 광고의 삭제는 프랑스 텔레비전의 경영자들에게 공공 시청각 서비스의 사명에 대한 높은 인식에 기반 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장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장 큰 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009년 1월 5일부터 프랑스 텔레비전의 채널들에서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저녁 시간대 방송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약 20시 35분에 시작 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 두 번째 시간대는 약 22시 15분에 시작할 것이고, 저녁 세 번째 시간대는 23시 30분부터 시작할 것이다.

만약 공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공공 시청각 기업들에게 차별성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개혁은 또한 디지털 기술의 일반화에 적용하면서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구조적 개혁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정체성 및 그 양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오늘날 십여개의 기업들로 구성된 프랑스 텔레비전 그룹은 몇몇 작업과 기능들의 상호 연관 및 경제적 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작사들(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et RFO)을 통합 할 것이다.

결국, 공영 텔레비전의 개혁은 공공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힘 있는 행위자의 출현을 희망한다. 이 개혁은 프랑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랑스 뿐 만 아니라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들에도 해당이 된다. 그 목적은 실상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에 CNN, BBC 그리고 알 자지라(Al Jazeera)와 같은 국제적인 거대 미디어와 나란히 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공공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한 법안 제1부의 내용들이다.

법안 제2부는 한 부분은 시청각 분야 사업체들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다른 한 부분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 사업체들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안은 유동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그리고 시청각 분야의 각기 다른 경제적 활동가들 사이에서의 동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이 재정이 사용자가 담당할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3부는 텔레비전 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 규칙 및 행정 규정들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는 1989년 10월 3일 유럽 연합 이사회의 디렉티브 89/552/CEE의 개정, 즉 2007년 12월 11일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디렉티브 2007/65/CE에 의해 최근 개정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일반화의 효과에 따라 시청자들의 주문에 따른 프로그램 서비스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서 텔레비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체제를 실제적 방법 면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은 주문형으로 부르는 새로운 서비스들에 있어서 운영자들 간에 있을 왜곡된 경쟁을 밝혀내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 하며, 법률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채택된 규정들은 강력한 경제적 잠재성을 통해 이 서비스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충분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시청각과 영화를 고려하여, 공공정책 서비스에 이러한 도구들을 적용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안 제4부는 영화관련 법을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몇몇 법률적 본성을 가진 규정들을 명령(ordonnances)을 통해서 집행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CNC(국립영상원)의 조직 및 기능은 원래의 모든 조직 체계를 보존하면서 현대화 될 것이다 : 해당 모든 분야의 현실들을 고려하여 역량을 확대시키면서, CNC는 유럽 차원의 계획에서 모범적인 양질의 공공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다 ;

- 1946년 이후 변함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영화 관련 법규들은 규범 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보다 적합하도록 할 것이다.

- 최종적으로 영화 상영에 대한 규제 조항들은 영화법과 경쟁법을 적합하게 구분하기 위해 개선될 것이다.

- 결국, 법안 제5부는 세가지 규정 시리즈로 구성될 것이다 : 다양한 규정들, 잠정

적인 규정들 그리고 최종적 규정들 등.

제1부. 공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영역과 관련한 규정

제 1 장. 국립 프로그램 방송사

1° 프랑스 텔레비전의 재 조직화 :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

공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콘텐츠 제공물들을 가치화 하는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에 대해 부응하는 것이다. 이 혁신은 그 안에서 새로운 관리 모델이 작동하는 것으로써, 지향하는 목적의 성취와 추구하는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들을 적절하게 작동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공영방송을 위한 위원회(La commission pour la nouvelle télévision publique)는 2008년 6월 2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프랑스 텔레비전이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최근의 모든 경제적, 기술적 혁신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특별히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et RFO(Réseau France Outre-mer : 해외 프랑스 네트워크) 등의 사업체들이 결합되어 있는 지주회사로서의 프랑스 텔레비전 그룹을 단일 기업으로 재조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86-1067호 법의 44조의 I 을 개정하고 있는 법안 제1조의 내용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어쨌든 1986년 9월 30일 법 48조에 따른 책임 강령(제15조)이 정한 조건하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모든 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원칙으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국립 프로그램 회사이다.

라디오 프랑스와 관련한 내용에서, 법 44조의 새로운 내용은 프랑스 텔레비전이 전국 및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1 서비스와 라디오 울트라마린2(radio ultramarins2.) 서비스의 제작 책임을 직접 하고 있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마찬가지로 직접 혹은 중계망을 통해서(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특히 선택형 텔레비전 서비스)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들을 포함한 다른 시청각 서비스들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대중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문화 및 요구에 따른 양질의 프로그램의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편성물 속에 그리고 언제나 가장 폭넓은 공중을 집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립 프로그램 사들은 공적 재원에 의해 재정이 확보되지 하는 <다양화>로 부르는 활동들을 위해서 자회사들을 설립할 수 있다(제3조).

1.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France Ô, Tempo et Télé pays 등.
2. RFO에 의해 편성된 라디오 서비스, 즉, 지역 프로그램 방송을 원칙으로 구성된 일반 라디오 서비스와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국제라디오프랑스(Radio France Internationale) 송출의 전국적인 연속성을 가진 라디오 방송 등.

결국, 법안 제1조와 제10조는 France 2, France 3, France 5 et RFO 사들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고,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 그룹을 단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2° 공공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분야 기업들의 관리

프랑스 텔레비전 운영의 현대화는 두가지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먼저, 현대화는 프

프랑스 텔레비전 회장 임명의 정당한 책임을 투자자인 국가에게 돌려준다. 다음으로 현대화는 대통령의 임명권 집행이 CSA(시청각 최고회의)가 확정한 입장에 의해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다양성과 독립성의 보호가 우선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해야한다.

이것이 국립프로그램 사의 사장들은 CSA가 확정한 입장을 듣고 5년 임기로 포고(décret)에 의해 임명된다는 것을 제시한 제8조의 내용이다.

조직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텔레비전 회장의 임명은 <EDF(프랑스전력회사), SNCF(국립프랑스철도회사), RATP(빠리 지하철 회사) 등 공공분야의 여타의 기업들에 대한 동일한 임명 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공공기업들에서의 이같은 임명은 제5공화국 국가기관들의 현대화에 관한 2008년 7월 23일의 헌법 n° 2008-724로부터 기원하고 있다. 즉, 이 임명은 <CSA가 확정한 입장을 청취한 후 임명이 이루어짐을 말한다.>

라디오 프랑스 및 국제 라디오 프랑스(RFI, 같은 법 제47-1과 제47-2조) 사장의 임명과 프랑스 텔레비전사장의 임명 사이에서 실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986년 법 제44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립 프로그램 사들에게 이 프랑스 텔레비전 사장의 임명 사항을 일반화시키는 것에서 그 기반이 나타난다(제8조).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의 행정위원회는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것이다(제5조와 제6조). 행정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소속 및 역량의 다양성 그리고 불편부당성을 통해서 새로운 공영방송을 위한 위원회의 권고(recommandations)에 의해 그리고 현재의 법에 약속한 심도 깊은 개혁을 실천에 기여할 것이다.

제1부에서, 국립프로그램 사들의 행정위원회의 심의 형태들과 관련 있는 1986년 법 규정들은 몇몇 사소한 형식들에 얽매어 있었다. 반면에, 국립프로그램 사들의 행정위원회의 사장들의 임기를 정지시키는 조건들과 관련한 규정들은 강화되었다. 어찌든 CSA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견해는 포고의 내용과 일치한다(제9절).

3° 해외 프랑스 시청각의 재조직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관련된 기업들 각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가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외 시청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 수개월 전 부터 약속된, 중요하고도 야심찬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개혁의 틀 안에서 국가에 귀속된 지주회사, <해외 프랑스 시청각 (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이 창설되었었다.

이 지주회사는 국제 라디오 프랑스(RFI), France 24, TV5 Monde 등 해외 시청각 기업들 속에서 공적 참여를 재조직화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1986년 법 속에 국제 라디오 프랑스의 위치를 해외 프랑스 시청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는 기업은 국립 프로그램 사가 된다.(제2조)

이 해외 프랑스 시청각 사는 해외에서 프랑스 및 프랑스 문화 권역에 참여할 프랑스 어권의 방대한 중재의 역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회사들의 협력 체제와 전략적 방향들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규정할 것이다.

다른 한편, 다른 국립 프로그램 사들에 있어서,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는 스스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포고에 의해 규정된 책임 강령(le cahier des charges)(제15조)은 회사가 제안하는 각 서비스에 대해 혹은 자회사를 통한 공공 서비스 의무, 즉 회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존할 수 있는 여건들 하에서 시행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규정할 것이다.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의 구성은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제7조)의 행정위원회로부터 폭넓게 영감을 얻었으며, 사장은 다른 두 개의 국립 프로그램 사의 사장들에 대한 임명(제8조)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임명된다. 이것은 프로그램 제작 체계의 방향을 확고히 할 것이다(제7조). 1986

년 법 제47조에 관한 법안 제4조는 회사의 자본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주요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2장. 전파와 전송

모든 송신 장치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회사들과 국립프로그램 사에 의해 제작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986년 9월 30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수정 항들이 적용된다. 이 법안 제1부에서, 1986년 법 제26조는 공공서비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립프로그램 사들의 모든 자회사들이 무선 전파 자원의 우선적인 이용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다(제11조).

(케이블, 위성, ADSL 등) 여타의 송신 방법과 관련해서, 프랑스 텔레비전 그룹의 단일 기업으로의 전환은 France 2, France 3, France 5 그리고 RFO 사들에 대한 모든 지표를 삭제하기 위해 1986년 법의 여러 조항들이 최종적으로 개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3장. 국립프로그램 사들의 책임 강령 및 기타 의무사항

공공 시청각 분야는 민간 부분과 마찬가지로 결론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는 1986년 법 제48조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포고에 의해 명시된 책임 강령의 틀에 기반한다(제15조).

공공시청각 분야의 개혁은 특히 단일 기업으로의 창립은 다양성 보호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각 서비스들의 특성들을 규정하게 될 하나의 책임 강령에 따라서 프랑스 텔레비전이 직접 제작 할 다양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에게 적용

할 수 있는 의무사항들의 조화 및 단순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포고에 의해 정해진 책임 강령에서 방송의 활동 개념(주문 및 생산에 따른)과 프로그램화 작업과 관련한 책임 분담에 대한 규정은 생각 및 의견 교류의 다양성 및 공공 시청각 분야 프로그램의 다원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책임 강령은 방송사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들에게 부과되는 공공 서비스 의무들을 규정하며, 특히 창작 지원 발전의 기초를 규정한다.

다른 한편, 교육, 문화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을 위해, 1986년 법 48조가 정하고 있는 국립 프로그램 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후원은 계속 유지되며, 더 이상 그에 대한 허용은 제한되지 않는다(제15조).

1986년 9월 30일 법 제56조에 따라, 종교적 특성이 있는 방송에 대해 프랑스 텔레비전은 책임 강령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일반 채널 중의 하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송신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제17조)

반면에 의회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의 재송신과 관련해서, 프랑스 텔레비전은 다양성을 위해 지상파 의회 방송의 전송 권역인 지역에서 아날로그 지상파 송신이 중단 할 때,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그 책임을 종결할 수 있다(제16절).

제4장. 목적 및 방식에 관한 협약

1° 국립프로그램 사들과 국가 사의의 관계성에 대한 파일 룯 도구

프랑스 텔레비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은 새로운 책임 강령 속에 기록 되며, 1986년 법 제53조를 적용하여 목적 및 방식 협약을 맺음으로써 더욱 강화될 것이다(제18조). 이 도구는 프랑스 텔레비전의 프랑스어 버전, 유럽 시청각 및 영상물의 창작 활동에서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을 위한 위원회가 지시했었던 것과 일치하면서, 회사의 <여러 해 동안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규정하는 프랑스 텔레비전과 국가 사이의 선도적 관계를 위한 도구가 되는> 목적 및 방식 협약은 국가의 시청각 전략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사장의 임기 보장, 그리고 목적 및 방식 협약(COM) 기간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어쨌든, 이 가능성은 1986년 법 제53조의 제I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책임 강령이 정한 의무사항들의 준수여부를 통제하는 것은 1986년 법 제 48-1항과 그 이후 항들이 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에 따라 CSA의 권한에 속한다. 즉, 목적 및 방식 협약의 이행에 대한 규제는 국가의 관리 감독권에 속한다.

Compte tenu de l’imbrication de ces deux dispositifs il est prévu un renforcement du rôle du CSA : le présent projet de loi prévoit que le CSA est désormais consulté sur le projet de COM, ainsi que sur les avenants qui y sont apportés.

이 두 조항들이 연속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CSA 역할의 강화이다. 여하튼, 이 법안은 CSA는 목적 및 방식 협약 계획에 대해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해 발생할 사안들에 대하여 자문을 받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2° 광고 속박의 압력

France 2 와 France 3에 의한 광고 메시지의 방영 기준들과 관련 있는 1986년 법 제 53조 제VI을 개정하는 법안 제 18조는 광고를 폐지하는 일정들, 즉 광고 금지 특례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한편에서는 모든 도시 지역에서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 형태로 된 지상파 헤르츠 전파의 송출이 중단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9년 1월 5일부터 24시에서 6시까지 광고의 부분적 중지를 제시하고 있다.

광고 폐지 원칙의 특례조항은 여하튼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 광고 메시지 방송의 금지는 사실상 지역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전국적 텔레비전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이 특례조항은 France 3의 지역 방송, 그리고 인터넷 서버 및 France 3의 기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유제품 등) 판매가 허용된 분야의 소구 속에서 나타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광고, 오직 상업적인 광고는 금지된다. 보편적 이익과 관련된 분야는 광고적 특성을 나타내기 않으므로 여전히 방송이 가능하다.

제5장. 수신료에 대하여

이 법안은 수신료의 징수에 의한 공공시청각 영역의 재정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명목으로, 제19조는 시청료 총액을 재정법의 부록에서 제시한 인플레이션 비율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청료의 첫 고시 해는 2009년으로 한다.

다른 한편, 법안은 2006년 재정법에서 제시한 규정들과 함께 시청료의 징수 방식과 관련한 1986년 법 제53조의 3항 규정들을 연장해서 적용한다.

결국, 프랑스 텔레비전에 의해서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et RFO 를 위해 공적 재원이 집행되는 형식을 규정한 1986년 법 제53조의 4항은 모든 국립 프로그램 사들과 공공 서비스 방송을 책임지는 자회사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제2부.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 분야의 운영자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조세 제도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들에서 광고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공적재원을 통한 보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제18조). 이 보상은 방송사가 개정된 책임 강령에 따라 실행해야 할 공공 서비스 의무의 강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 텔레비전 채널에 의해 방영되는 광고에 대한 세금

프랑스 텔레비전에 있어서 이같은 광고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보다 텔레비전 서비스 제작자들에 의해 방영되는 광고, 그리고 광고 메시지의 방영을 위해 광고주들이 제작자나 광고 대행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 체제를 정립시켜야한다. 이 세금 비율은 3%로 정한다(제20조)

2° 전자 커뮤니케이션 운영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세금

마찬가지로, 공공 시청각 서비스의 재정에 대해 전자 커뮤니케이션 운영자들이 할 기여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우편 규제 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 électroniques et des postes)에 사업 신고를 한 운영자들로부터 출원되는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우편 법 제 L32조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우편 규제에 의해 명시된, 프랑스에서 설립된 전자커뮤니케이션 운영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그들이 제공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수입으로 이용자들이 운영자들에게 지출하는 총액에 기초한다.

이 세금은 공정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을 통해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그리고 터미널의 판매 및 대여 같은 여타의 활동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들이 운영자들

에게 지불하는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 비율은 0.9%로 한다(제21조)

제3부. 2007년 12월 12일 유럽연합 디렉티브 2007/65/CE에 의해 개정된 1989년 10월 3일 유럽연합 디렉티브 98/552/CEE의 여러 규정들의 대체

법안 제3부는 2007년 12월 11일 유럽의회(parlement européen)와 유럽연합 이사회(Conseil)의 디렉티브 2007/65/CE에 의해 최종 개정된 텔레비전 방송 활동과 관련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 규칙 및 행정적 규정들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1989년 10월 3일 유럽연합 이사회 디렉티브 98/552/CEE를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1°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a) 정의

유럽연합 디렉티브 2007/65/CE는 두 개의 서비스 카테고리를 재구성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라는 용어를 디렉티브 98/552/CEE 안에 삽입하였다. 이 두 카테고리는 직선적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즉, 전통적 텔레비전)와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명명하는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이다. 따라서 디렉티브 89/553/CEE의 적용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로 확대되며, 이 디렉티브와 더불어 몇가지 응용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불리는 텔레비전 서비스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제들도 새로운 서비스로 확대된다.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미디어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선정된 어떤 프로그램 카테고리에 기초하여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순간에 그리고 개인적 요구가 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디렉티브에 의해 규정된다.

이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를 고려하여, 디렉티브 2007/65/CE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의 정의로부터 배제 된다 :

- 제1차적인 역할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과 경쟁적이지 않은 활동들, 예를 들어, 공동체적 관심을 중심으로 중국적으로 콘텐츠를 배분하거나 교환하는 사적 인터넷 사이트 혹은 개인적 이용자들이 의해 만들어진 시청각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공급하는 서비스들 ;
- 전자 신문 및 전자 매거진 버전들 ;
- 제작 책임이 외국인에 귀속된 프로그램들 만을 배포하는 개인회사 및 법인 ;
- 활동의 최종적 본질이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서비스들, 즉 시청각 콘텐츠가 부차적인 서비스들. 예를 들어 검색엔진, 온라인 게임 등의 비 시청각 서비스나 생산물과 관련된 정보, 간략한 스포츠 광고, 그래픽 만화적 요소들과 같이 단지 장식으로써 사용된 시청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

이 법안의 제2부는 1986년 9월 30일 법 속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그리고 여타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과 나란히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를 삽입시키고 있다. 이는 1986년 9월 30일 법 제2조에 대해 법안 제22조에 의해 진행되는 개정 내용이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와 부가 텔레비전 서비스는 그 본질적인 실체가 이 새로운 카테고리에 속한다. 공급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카탈로그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들만이 이 정의(définition) 관련이 있다.

몇몇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의 복잡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채택된 이 정의는 1986년 9월 30일 법이 관심 공동체들 사이에서 서로 배분하고 교환하는 최종 단계에서 개별 이용자들이 의해 창작된 시청각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급,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의 도달자에 의해 제공되는 시청각 부호의 저장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공

급, 그리고 외국인의 통제 하에 선택되고 구성된 시청각 콘텐츠 프로그램 공급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떤 공급 행위가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공급은 오직 이에 관한 첫 장의 제목 하에서 만 이 법의 규정들에 속하게 된다.

b) 법적 체제

이어서 이 법안의 제3부는 모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되는 1986년 9월 30일 법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

- 차별 반대 운동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들과 관련한 1986년 9월 30일 법 제 3-1조의 규정은 이 법안 제23조에 의해서 모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로 확대된다.

-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배포로부터 이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CSA가 제작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실체와 적합한 방법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1986년 9월 30일 법 제15조는 이 서비스들로 확대 적용된다. (제27조)

- 1986년 9월 30일 법의 제20-1의 프랑스어의 이용과 관련한 규정들은 이 법안 제28조에 의해 모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확대된다.

- 프로그램화와 관련한 또 다른 규정들, 특히 광고에 대한 규정들과 작품의 판매 체제와 관련한 규정들은 콩세이유데따(Conseil d'Etat : 행정부 자문기관이자 최고 행정 재판소)의 포고에 의해 명시될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들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이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포고들은 새로운 서비스들의 본질적 특성들을 잘 설명하게 될 것이다.

- 특별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와 관련해서, 포고들은 담당해야 할 가시적인 체제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지상파 헤르츠 망에 의해 전송되는 서비스들을 위한 제29조와 다른 전자커뮤니케이션 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서비스들을 위한 제36조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규정들에 대해 제2부는 명령(recommandation)과 관련해서 (1986년 9월 30일 법의 제3-1항을 개정한 새 법안 제23조), 제14조(법 14제를 개정한 제25조)에서 제시된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광고의 금지 및 광고의 프로그램화 형식에 대해 규제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행정 규제의 내용과 관련해서(법 제42조, 42-2조 그리고 42-7조) CSA의 중재방식들을 확대 시키고 있다.

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이 서비스들이 지상파 헤르츠 망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서비스들에게는 무선 전파 대역 안에서 위성에 의한 전송체제를 실질적으로 확장 시킬 기회가 되며(법 제30-6조를 개정한 제31조), 또한 여타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 상에서 전례 없는 전송 체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법 제33-1조를 개정한 제34조).

결국, 개정에 대한 표현은 제24조(기술적 규범)와 제32조와 제33조(법 제2부의 제2장의 제목)에 나타난다.

2° 법 적용 분야에 포함되는 서비스들의 규정

법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1986년 9월 30일 법 제2부의 제5장 조항들을 개정하고 있다.

오늘날, 1986년 9월 30일 법은 사실상 프랑스에 설립된 생산자들의 텔레비전 서비스들(제 43-2조와 제43-3조) 그리고 해외에서 설립되었어도 프랑스와 관련된 위성이나 프랑스에 있는 기지국에서 송출되는 연계망을 이용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제43-2조와 제43-4조).

1989년 10월 3일 유럽연합 디렉티브 89/522/CE에서 제시된 이 기준들은 2007년 12월 11일 유럽연합 디렉티브 2007/65/CE에 의해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까지 확대되었었다.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들에 대하여서도 2007년 12월 11일 디렉티브는 오직 프랑스 위성을 이용하는 서비스와 모든 연계망에 대한 기준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외에서 제작된 서비스들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들의 범주를 단순화하였다.

법안 제40조에서 제44조까지는 이러한 변환을 확실히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내용에는 마찬가지로 법과 이 법의 집행 포고가 프랑스의 감독권에 속해 있으면서 유럽 평의회(Le Conseil de l'Europe)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배포되는 서비스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국경적 텔레비전에 대한 1989년 5월 5일 유럽 평의회의 개정 협약의 적용에 따라서 프랑스의 감독권에 속해 있는 텔레비전 서비스들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법안 제45조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와 1986년 9월 30일 법의 제43-6조의 규정들을 유럽평의회의 개정 협약의 적용에 따라서 프랑스 감독권에 속해 있는 텔레비전 서비스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에서 텔레비전 서비스들의 재방영은 사전적 형식적 틀 없이 할 수 있으며, CSA가 감독 할 수 있는 조건들은 투명하게 제시한다. 어쨌든 이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형태들은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유럽 평의회의 협약에 의해 제시된 서비스들과는 다른 텔레비전 서비스들에 대한 분석과, 디렉티브 89/552/CEE의 용어들로, 텔레비전 서비스들을 위해 조직된 형태들과는 다른 주문형 미디어 서비스들의 묶음 형태들에 대한 측정에서, 서비스 카테고리들 간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

결국, 법안 제45조는 프랑스 법이 <탈지역화 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프로그램 편성이 기본적으로 혹은 총체적으로 프랑스 공중에게 전달되면서도 프랑스 규제체제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 속에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제작된 서비스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 장애인 및 청각 장애인의 접근

유럽연합 디렉티브 2007/65/CE는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감독권에 속해있는 서비스들이 시각적 혹은 청각적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 미디어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정부가 2008년 6월 2일 제시한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각장애> 계획의 틀 속에서 진행된다.

이 적용은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청각 프로그램 안에 구어적으로 묘사한 설명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적용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이나 수화처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늘날 텔레비전 서비스 제작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 종류의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 운영자들에 대해서, 1986년 법 제28조와 제33-1조가 제시한 규정은 CSA가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비율을 서비스에 더불어 최종적인 협약 속에 삽입시키도록 하고 있다(제30조와 제35조).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 규정은 공영방송의 '목적 및 방식 협약'에 의해 명시되도록 한다.(제18조)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에게 제공 될 프로그램의 초기 생산단계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작자들이 담당하게 되는 영화 및 시청각 생산에 대한 지원 속에서 이 기술들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더욱 고무 될 것이다(제29조와 제34조).

4° 다른 규정들

유럽연합 디렉티브 2007/65/CE는 현금이나 다른 댓가를 지급하면서 생산품, 서비스,

.....

그것들의 표시, 혹은 프로그램 안에 삽입하여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작품 위치 (placement de produits)>로 부르는 기술의 금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 디렉티브는 몇몇 조건하에서 회원국가들에게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법안은 이 주제에 대한 규제 집행에 의해 얻은 경험 및 위치와 관련한 규제 체계의 아주 세세하고 유동적인 특성을 설명하면서 CSA에 추가적인 규제권한을 부여한다(제26조).

광고 메시지에 의해 작품이 중단되는 사안에 있어서, 이 법안은 프랑스 법을 유럽연합 디렉티브 89/552/CEE의 규정들과 근접해진다. 1986년 9월 30일 법 제73조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의해서 영화나 시청각 작품의 방영이 CSA가 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 더 이상 광고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쨌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용자들의 일부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재정이 마련되는 텔레비전 서비스 및 공공 분야의 회사들에 의한 영화의 방영은 전혀 광고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법안 제46조는 텔레비전 서비스 상에서 시청각 작품과 영화를 방영할 때, 잠깐의 광고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조항의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 어쨌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큐멘터리, 단편 문학, 시리즈를 예외로 하고,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방영은 텔레비전 광고에 의해 30분 단위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한번 중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회 이상은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공영 텔레비전 서비스에 의해 그리고 텔레비전 용 영화 서비스에 의한 영화의 방영에서는 어떤 광고도 중간에 삽입할 수 없다.

제4부. 영화, 기타 예술작품 및 만화영화 산업과 관련한 규정

제47조와 제48조는 정부가 영화법을 현대화하기 위해 법률적 기초를 갖는 몇몇 규정들을 명령(ordonnances)에 의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47조는 정부가 6개월 안에 영화 및 기타 예술 작품 그리고 만화영화 산업에 관한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산업에 관한 통합법(Code) 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영화 법(droit)은 결코 1956년 이후 총체적인 현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다.

이 혁신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국가에 대한 CNC(CNC :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의 사명 한 편에서, 중심적 행정 역할이 부여되는 등, 그 효과를 보충하기 위한 이원성이라는 CNC의 특수성을 전적으로 보호하면서 이 기관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수성을 반영한 CNC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정부 행정관들과 전문가들과의 심도깊은 대화 - 이 대화는 어쨌든 이 기관을 이끌어가는 문서들로 기록되지 않고도 진행됨 - 에 의해 실질적으로 진행된다.

현실적으로, 공적 기관들 내의 한 행정 위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역할들은 한명의 사무총장에 의해 수행된다.

다른 한편, 영화관에서의 관람 요금에 적용되는 세금 징수가 CNC로 이전됨으로써 2007년부터 증대되기 시작한 CNC의 재정 자립은 2009년도 재정법의 기초 안에서 후원자들이 지출하는 세금의 징수로 충원함으로써 지속될 것이다.

이 개혁은 보다 나은 생산성의 관점에서, 텔레비전 서비스 제작자와 배포자들에 대한 세금을 CNC가 직접 징수함으로써 집행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CNC의 운영을 안전하게 보호할 행정위원회의 안정화를 합리적으로 동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운영 조직들은 제도화 될 것이다 : 즉, 적절한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와 이 기구를 이끌어갈 책임을 지는 원장 등이 선임될 것이다. 이 현대화는 공공 기관들에 부여된 적합한 직무와 중앙 행정 직무 사이에 존재하는 대등함에 대한 치우침 없이 실행될 것이다. 기관의 활동 방향은 원장의 이중적 역할을 통해서 설명되는 CNC의 복합적인 권한을 반영한다.

이 개혁은 마찬가지로 영화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CNC의 역할에 대한 법적 지원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CNC는 관련된 전문

영역들이 발전하면서 더욱 확장될 것이며, 따라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만화영화의 세계적인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 충분히 적응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활동 분야의 차이는 혁신된 영화산업 법 안에 명시될 것이다.

다른 한편, 부적합한 규범 차원에서 만들어졌거나 적용되지 못하고, 또한 매년 쓸모 없었던 많은 규정들은 적극적인 법적 실천과 수정 과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특히 CNC의 통제 하에 있었던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 검열 체제 및 벌금 체제, 그리고 전문 활동, 영화 활동 혹은 영화 및 시청각 작품들의 제작비용의 투명성 등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 적용이 원장의 권한과 협의체의 권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행정 위원회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같은 시각에서, 재정적 후원자들의 일반적 역할에 대한 조건들에 대한 결정이 기관의 행정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48조는 8개월 안에 정부가 영화 상영자의 권한을 확대 하고, 영화 상영 기관들의 프로그램화 약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영화 상영에 대한 규제 조항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와 배포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영화의 재현권리들의 정지 조건들과 다양한 진입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영화 진입 형태들에 대한 협정을 교부하기 위한 조건 및 형식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와 경쟁(Cinéma et concurrence)> 보고서와 영화에 대한 무제한 접근 형식들에 대한 협정 위원회(commission d'agrément)의 활동 평가서 속에서 발전 제안을 제시했던 이 조항이 보여준 세가지 분야들은 새로운 규제 틀이 실행되기 전에 영화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제55조가 제시한 영화법의 현대화와 관련한 명령(ordonnance)과는 다른 이 명령의 적용을 위해 8개월의 기간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5부. 다양하고, 전환적이며 최종적인 규정들

제49조는 1986년 9월 30일 법 제29-3조를 개정한다. 이 개정은 CSA가 사업 신청 후보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허가의 갱신, 그리고 허가 혹은 협약 조건들의 비 본질적인 개정 요구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지방의 기술 위원회들이 해당 지역을 넘어서지 않는 허가를 위해 잠정적인 허가권을 발급하도록 지방(région)의 기술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0조는 1986년 9월 30일 법의 제108조에 의해 시행되는 범 대양적(전세계적) 적용 분야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개선된 공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환을 조직화하기 위해 여러 개정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51조는 방송사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그리고 RFO의 의무, 권한 그리고 생산물들을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으로 이전하면서, 집약적 융합 형태로 기업들의 전환을 조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은 그룹의 설립 취지에 따라, 해외 시청각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RFI(국제프랑스라디오 : Radio France Internationale)의 활동을 국가를 통해서 전환 시키고 있다.

법안 제52조는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의 사장들의 임기가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 및 현 법안이 채택한 사안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점을 명시하고 있다 : CSA는 이 기업들의 행정 위원회에 이름이 올려진 위원단들을 충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CSA는 RFI의 행정위원회가 새로운 행정위원회로 대체될 때 까지 활동을 지속하도록 보장한다.

제53조는 프랑스 텔레비전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 프로그램 회사들에게 불하되었던 라디오 전파 자원의 이용권을 프랑스 텔레비전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한다. 제53조는 이전에 RFI에게 허용되었던 전파의 이용권에 대한 효력을 보장한다.

제54조는 유럽 밖에서 설립된 기업들에 대하여 프랑스 법의 적용을 보장하는 기술적 기준들과 관련한 1986년 9월 30일 법 제43-4조에 대해 제49조가 설명하고 있는 규정들을 2009년 12월 19일 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적용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법적 혼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54조는 사실상 이 개정이 유럽연합 디렉티브의 적용 제한 기간까지, 단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한 디렉티브 89/552/CEE의 접촉 위원회(le comité de contact)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결국, 제56조는 해외 령에서 1986년 9월 30일 법의 규정들과 제출된 이 법안이 정하고 있는 규정들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공영방송서비스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안³⁾

제1부. 공공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한 규정들

제1장. 국립프로그램 회사들에 관해서

제1조

I.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44조의 제 I 은 다음과 같은 규정들로 대체 된다 :

프랑스 텔레비전에 의해 임명된 국립프로그램 사들은 지역 및 전국적 범위에서 텔레비전 방송과 범 대양적 라디오 방송을 관리 하고 프로그램화 하는 책임을 갖는다.

프랑스 텔레비전 사는 국립프로그램 사들이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통해서 제48 조가 제시한 책임 강령에 의해 규정된 조건들에 따라서 모든 대중들을 위한 접근성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존한다.

프랑스 텔레비전 사는 책임 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작한다. 프랑스 텔레비전 회사는 직접 제작하거나 자회사들의 중개 방식으로 모든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을 이용해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제43-11조가 규정하고 책임 강령에 의해 정해진 공공 서비스 활동에 부합하는 주문형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포함 한다.

3) 항목별 개정내용

II. 같은 법 제44조의 제V의 첫 번째 항에서 : <제 I의 마지막 항이 언급한 자회사들과>라는 단어들은 삭제한다. 같은 법 제57의 제II의 첫 번째 항에서, <제44조의 제II의 마지막 항이 언급한 회사들 안에서 혹은> 이라는 단어들은 <제43-11에 규정된 공공 서비스 의무에 부응하는 자회사들 속에서 혹은>이라는 단어들로 대체된다.

III. 같은 법 제44조의 제V의 두 번째 항에서, <그 회사들 각각에 적합한 자회사와>라는 단어들은 <자회사들>이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제2조

같은 법 제44조의 제IV는 다음의 규정들로 대체된다 :

<IV.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권의 발전과 방송에 기여할 의무를 지고 있는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프로그램 사, 그리고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의 사건, 국제적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프로그램 사.

<결국, 국립프로그램 사는 자신이 자본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투자한 기업들에 의해 제작된, 특별히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프랑스 공중이나 외국의 공중에게 제공되는 프랑스어 혹은 외국어로 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의 조화 및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한다. 국립프로그램 사는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 국립프로그램 사는 또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

<제48조를 적용함에 따라서 설립된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프로그램 사의 책임 강령은 공공서비스 의무들을 규정한다. 이 의무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모든 서비스에서 실현해야하는 조건들 그리고 전향에서 언급한 서비스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

제3조

같은 법 제44-1조는 다음의 규정들로 대체된다 :

<제44-1조. 제44조에서 언급한 회사들은 마찬가지로 제43-11조가 제시한 회사들과 다른 사회적 내용들로 구성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들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같은 법의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들로 대체된다 :

<국가는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 사들의 모든 자본을 직접 소유한다. 국가는 해외에서 시청각 활동을 담당하는 기업의 다수의 자본을 직접 소유한다.> ;

2° 두번째 항에서는 <France 2, France 3, France 5 et RFO 사들>이라는 단어들을 삭제한다.

제5조

같은법 제47-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첫 번째 항에서 <포함 한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장을 포함 한다>이라는 단어들로 대체된다 ;

2° 18번째에서 제6번째 항은 삭제된다.

제6조

같은 법 제47-2조의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들로 대체 된다 :

<라디오 프랑스 사의 행정위원회는 임기가 5년인 사장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

같은 법 제47-3조는 다음의 규정들로 대체 된다 :

<제47-3항.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의 행정위원회는 임기가 5년인 사장과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상원과 하원에서 추천한 의회 관계자 2명 ;

<2° 포고에 의해 임명된 국가의 대표자 목록으로 남겨진 경영인 연합회가 제시한 5명의 대표자 ;

<3° CSA가 보증하여 임명한 4명의 개인 ;

<4° 공공 분야의 민주화와 관련한 1983년 7월 26일 법 n° 83-675의 제2장의 규정들에 따라 선출된 2명의 개인 대표.

<해외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의 사장은 회사 산하의 각 프로그램 제작 회사들의 사장이나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제8조

같은 법 제47-4조는 다음의 규정들로 대체 된다 :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 담당 회사의 사장들은 CSA

의 견해의 일치 후에 5년의 임기로 포고에 의해 임명된다.>

제9조

같은 법 제47-5조의 첫 번째 항은 다음의 규정들로 대체 된다 :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 사장들의 임기는 마찬가지로 동기에서 CSA의 견해의 일치 후에, 관련된 포고에 의해서 보장된다.>

제10조

같은 법 제47-6조에서 <프랑스 텔레비전과 France 2, France 3, France 5 et RFO, 그리고 제44조의 제 I의 마지막 항에서 제시한 회사들 사이에서의 최종적 협약>이라는 단어들은 삭제된다.

제II장. 전파와 송출에 대하여

제11조

같은 법 제26조의 제II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에서, <제44조에서>라는 단어 후에 <공공 서비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회사들에게>라는 단어를 삽입 함 ;

2° 첫 번째 항의 두 번째 문장은 삭제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34-2항의 제 I 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첫번째 항에서, 용어 : <제44조의 제 I 의 제4°에서 언급된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대도시 공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 은 <제44조의 제 I 에서 언급된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대도시 공중에게 제공되는, 특별히 해외 령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지상파 헤르츠에 의해 전파되는 텔레비전 서비스들>이라는 용어들로 대체된다.> ;

2° 두 번째 항에서, 용어: < 해외 프랑스 망(Réseau France Outre-mer)>은 <제44조의 제 I 에서 언급된>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제13조

같은 법 제34-5에서 용어 : <제44조의 제 I 의 제 2°에서 언급된 국립 프로그램 사의 지방(régionaux) 프로그램>은 <특별히 해외 령에 제공되는 지역 프로그램들은 제외하고, 제44조의 제 I 에서 언급된 국립 프로그램 사의 지역(locaux) 프로그램들>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제14조

같은 법 제98-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두 번째 항에서 용어 : <제44조의 제 I 의 제4°에서 언급된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은 <제44조의 제 I 에서 언급된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해외 령에 대한 지식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으로 대체한다.

2° 네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 한다 :

<이 제공 중의 하나는 특별히 해외 프랑스 령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예외로 하고, 제44조의 제 I 에서 언급된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 프로그램 사들의 모든 지역 프로그램이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동시에 수신될 수 있도록 한다. >

제3장. 국립프로그램 사들의 책임 강령 및 기타 의무

제15조

같은 법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1° 첫 번째 항의 두 번째 줄은 다음의 문장으로 대체된다.:

<이 회사들 중의 하나가 다양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작할 때, 책임 강령은 그 각 회사들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방영물의 프로그램 편성, 주문, 생산과 관련하여 회사들 간에 각각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는 프로그램 공급의 다양성, 생각 및 의견 흐름의 다원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2° 다섯 번째 항은 다음의 항들로 대체된다 :

<이 기업들은 책임 강령이 규정한 조건들 속에 자신들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다 >

<책임 강령은 제44조에서 언급된 기업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한다.>

제16조

같은 법 제55조의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 한다 :

<프랑스 텔레비전을 통해 의회의 토론을 재방송하는 것은 각 해당 의회의 사무처의 통제 하에 실현된다. 이 재방송은 어쨌든 제45-2조에 언급된 채널이 지상파 헤르츠

방송이 가능한 지역에서 아날로그 형식의 지상파 헤르츠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할 수 있다.>

제17조

같은 법의 제56조에서 용어 <France 2 사>는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으로 대체된다.

제4장. 목적 및 방식 계약

제18조

같은 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 된다 :

1° 제 I 의 첫번째 항에서, 용어 <국제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Internationale)>는 용어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로 대체한다.

2° 제 I 의 첫 번째 항은 따라서 다음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 <새로운 계약은 새로운 사장 임명 후에 결정될 수 있다.>

3° 같은 법 제53조의 제 I 의 세 번째 항 이후에, 다음의 내용이 삽입된다.

<- 적용된 규정들에 따라서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들>

4° 제 I 의 여덟번째 항은 삭제된다 ;

5° 제 I 의 아홉 번째 목에 다음의 용어 <전달된다>는 < CSA로 전달된다>로 개정하고, 세 번째 문장 머리에 <CSA 그리고>를 기술한다.

6° 제 I 의 마지막 항에서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국제 라디오 프랑스 (Radio France Internationale) 그리고 아르떼 프랑스(Arte - France) 사들은>은 <라디오 프랑스, 아르떼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로 대체한다.

7° 제 II 의 두 번째 항은 삭제한다.

8° 제 II 의 마지막 항에서 <그리고 라디오 프랑스와 국제 라디오 프랑스 사들 >은 <라디오 프랑스와 해외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의>로 대체한다 ;

9° VI 는 다음의 규정들로 대체 된다. :

« VII. - 2009년 1월 5일부터, 제44조 제 I 에서 언급된 전국 텔레비전 서비스들의 20시에서 6시 사이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에서, 지역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상품들에 대한 것 이외의 광고 메시지는 금지된다. 이 규정은 마찬가지로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제44조의 제 I 이 언급한 텔레비전 서비스들을 아날로그 지상파 헤르츠에 의한 송출이 중지하는 때 부터는, 6시에서 20시 사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이 항의 내용들은 국가가 재정적 보상을 책임진다.>

제5장. 시청료에 관해서

제19조

I. 조세 일반법의 제1605조의 제 III 에 다음의 항을 추가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총액은 담배 이외 소비자 가격표 위에 매년 기재 된다. 따라서 해당 회계년도의 경제, 사회 및 재정 보고서 부록에 기재 된다. 이 금액은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유로로 제공 된다. 금액 기본 단위는 0.5유로로 한다.>

II.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53조의 제

Ⅲ의 첫 번째 항에서 용어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s),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국제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Internationale), 아르떼 프랑스(la société Arte - France) 그리고 국립 시청각 센터(l'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사이에 공적 재원 사용을 고려한 공적 재원의 배분 계획> 은 <2006년 재정법을 기획한 2005년 12월 30일 법 n° 2005-1719의 제46조의 제 VI에서 구상된 재정적 지원 계획과 연관된 공적 재원들의 관련 기관들 사이의 배분>으로 대체한다.

Ⅲ. - 같은 법 제 53조의 제IV는 다음의 규정들로 대체된다. :

<IV.- 제44조에서 언급된 기업들과 관련있는 제Ⅲ에서 언급된 계산에 따른 공적 재원 총액은 공공서비스 활동 책임을 지고 있는 산하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제2부.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분야 운영자들의 사업 매출에 대한 세금 체제

제20조

I. - 조세일반법의 제1부의 제1장의 II속에 « *CHAPITRE VII SEPTIES* 기입한다.

« *CHAPITRE VII SEPTIES*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광고에 대한 세금>

< *Art. 302 bis KG.* - I. - 프랑스에서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 제2조의 내용에 따라 모든 텔레비전 서비스 제작들로 부터 징수하는 세금은 제도화 된다.>

<II.- 세금은 광고 메시지 대행사들 혹은 관련된 납부금으로, 부가 가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고, 광고주들에 의해 지불된 금액들의 총액에 대해서 부가한다. 이 합

계는 4% 요금 인하 내용들 포함하고 있다.>

<Ⅲ.- 세금 청구는 제Ⅱ에서 언급한 금액 지불로 실현된다.

<Ⅳ.세금은 부가가치에 대해 비과세로 하여, 1천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각 텔레비전 서비스에서 년 총 소득액의 3%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Ⅴ.- 징수는 그해 3월 혹은 1분기에 제287조의 제1에서 언급된 표명(déclaration)이 공개되면서 추진되는 당해년도의 세금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Ⅵ. 세금은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과 마찬가지로의 과정, 마찬가지로의 검열 및 보호, 보장 및 특권에 따라 징수되고 통제를 받는다. 이의 제기는 동일한 세금을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에 따라서 공고되고, 인식되며 판단된다.>

Ⅱ.- 조세일반법 제2권의 제1부의 제Ⅱ장에서, 제Ⅱ *quinquies*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Ⅱ *quinquies*. - 텔레비전 채널들에 의해 방영되는 광고에 대한 세금 징수 관한 특별한 체제

<Art. 1693 *quinquies*. - 제 302 bis KG조가 규정한 세금 징수는 전년도에 기준하여 세금 총액을 12 등분 혹은 4등분을 균일하게 배분하여 월별 및 분기별로 징수한다.

<제 302 bis KG조의 제Ⅴ에서 언급한 표명(déclaration)의 시각에서 요구되는 추가 세금은 그 표명이 제출되면서부터 징수된다.>

<당해 년을 기준으로 이미 지불된 할부금들이 최종적으로 징수될 세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불된 할부금에 이어 연장하여 할부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만약 세금 총액이 지불된 총 금액보다 20%를 초과할 경우, 제1727조가 정한 차후 이익과 1731조가 정한 증액이 적용될 수 있다.>

제21조

I.- 조세일반법 제1권의 제II부에서 제VII *octies* 장(un chapitre VII *octies*)을 기
제 한다.

<제 VII OCTIES 장

<운영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세금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제 302 bis KH 조. - I. 우편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법 제 L.32조의 내용에서 나
타난 모든 전자커뮤니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세금은 제도화 된다. 이 운영자는 프랑
스에 설립되고,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 제L.33-1조에 의해 우편 및 전자 커
뮤니케이션 규제기관에 사전 사업 신청을 신고한 업체이다.>

<II. 세금은,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자 커뮤니
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으로 제 I 이 언급한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요금 및 지불된 여타 금액의 합계에 기초 한다.

<어쨌든 다음의 사항들은 세금 부과 영역에서 배제된다 :

<1° 우편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법 제L.34-8조의 제 I 에서 규정한 협약의 내용을
실행하는 상호접속 및 액세스의 제공 명목에 따른 지불 총액 ;

< 2°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운반 혹은 전송의 제공 명목에 따른 지불 총
액 ;

<III. - 세금 청구는 제II에서 언급된 여타의 총액과 시청 가입의 결과물에 대한 과
세에 의해 이루어진다.

<IV.- 세금은, 부가가치에 대한 비과세에서,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징세 가능한 년
간 현금 총액에 대해 0.9%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V. - 세금 징수는 회기년도의 3월 달 혹은 제1분기의 부가 가치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전 회기년도에 산출된 세금 결산으로 진행한다.

<VI. -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세심하고 특별하며, 안전한 감시 하에서 동일한 과정에 따라 명시되고 통제된다.>

II. - 조세일반법 제II권의 제I편의 제II장 속에 다음의 II *sexies*를 삽입한다 :

<II *sexies*. - 전자 커뮤니케이션 운영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특별한 세금 징수 체제.

<Art. 1693 *sexies*.- 제 1609 *tricies* 조가 규정한 세금 징수는 전 회기년도에 부과된 세금 총액에 대해 최소 12 분할 혹은 4 분할로 하여 월별 혹은 분기별로 계산하여 이 징수한다.

<제 1609 *tricies*의 제V에서 언급한 표명(*déclaration*)에서 제시한 추가 세금 의무는 이 이 신고서의 제출 시 부터 시행된다.

<당해 년을 기준으로 이미 지불된 할부금들이 최종적으로 징수될 세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불된 할부금에 이어 연장하여 할부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만약 세금 총액이 지불된 총 금액 보다 20%를 초과할 경우, 제1727조가 정한 차후 이익과 1731조가 정한 증액이 적용될 수 있다.>

제3부. 2007년 12월 11일 유럽연합 디렉티브 2007/65/CE에 의해 개정된 1989년 10월 3일의 디렉티브 89/552/CEE의 다양한 규정들의 교체

제22조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세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공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를 위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게 된다. 즉,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이외에 전자 망 서비스에 의해 공중을 상대로 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정립을 위해 설치된 2004년 6월 21일 법 n° 2004-575의 제1조가 규정한 것으로 공중을 상대로 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는 관련이 없는 공중을 상대로 한 커뮤니케이션 등, 공중에게 제공되는 형태들 그리고 공중을 향한 모든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해하게 된다.

2° 이것은 다음의 기술된 항에 의해 완성 된다 :

<서비스 제작자에 의해 선택되고 조직되는 프로그램 카테고리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용자들의 주문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망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써 고려된다. 조세일반법 제256A조가 의미하는 경제적 활동과 관계가 없는 서비스들, 즉 시청각 콘텐츠가 부차적인 서비스들이며, 관심 공동체들 사이에서 서로 배분하고 교환하는 최종 단계에서 개별 이용자에게 의해 창작된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급,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의 도달자에 의해 제공되는 시청각 부호의 저장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공급, 그리고 외국인의 통제 하에 선택되고 구성된 시청각 콘텐츠 프로그램 공급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들 및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구성된 제공은 공급에 대한 첫 장의 제목에서 만이 이 법의 규정들로 채택되었음을 발견한다.

제23조

같은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1° 첫째 항에서 용어 <라디오와 텔레비전 분야에서>는 삭제된다 ;
- 2° 두 번째항에서 용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는 용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로 대체된다 ;
- 3° 세 번째 항에서 용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용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된다.
- 4°네번째 항에서 용어 <제30-5조가 언급한 서비스 제작자 등 라디오 와 텔레비전의>는 용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로 대체된다.

제24조

같은 법 제12조의 첫 번째 항에서 용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용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된다.

제25조

같은 법 제14조의 첫 번째 항에서 용어 <국립프로그램 사들과 이를 위해 교부된 허가권에 의해>는 삭제된다.

제26조

같은 법 제14조 이후, 제14-1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 된다 :

<제14-1. - CSA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한다. >

제27조

같은 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 된다 :

1° 두 번째와 네 번째 항에서 용어<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용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된다.

2° 세 번째 항은 다음의 용어가 추가된다 : <따라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본질에 부합되는 모든 방법의 실천>

제28조

같은 법 제20-1조의 첫 번째 항에서 용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용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된다.

제29조

같은 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3°의 두 번째 문장에서 다음의 용어 <이 기여는 가능하다>를 <이 기여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작품에 대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로 고친다

2° 두 번째 항은 다음의 문장으로 완성된다 :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의무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서비스들을 위해서 전술한 몇가지 규칙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0조

같은 법 제28조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5° bis의 두 번째 문장에서 용어 <서비스를 위해서> 를 <텔레비전 서비스를 위해서>로 고친다 ;

2° 같은 법 제28조의 5° bis 이후에 5° ter 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 5° ter.- 년 간 평균 시청률이 총 텔레비전 서비스의 2.5%를 초과하는 디지털 모형의 지상파 헤르츠에 의해 송출되는 텔레비전 서비스에 있어서, 최고 시청 시간대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들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

제31조

같은 법 제30-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 한다 :

<제26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위성에 의한 전송을 위해 할당된 전파의 이용은 공세 이유 데따(Conseil d'Etat)의 포고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CSA에 의해 허가를 받는다. 주문형 텔레비전 및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형식의 무선 서비스를 위한 허가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다. 아날로그 형식의 무선 서비스를 위해서 이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 ;

2° 세 번째 항에서 용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삭제된다.

제32조

같은 법 제II부의 제II장의 제목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술 된다. : < CSA가 허가한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망에 의한 주문형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시청각 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

제33조

같은법 제II부의 제II장의 제1색션의 제목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술 된다 :

<CSA가 허가한 전파를 이용하지 않는 망에 의해 주문형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제작.>

제34조

같은 법 제33조의 제6°의 마지막 문장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 <이 기어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작품을 시청 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5조

같은 법 제33-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1° 제 I 의 네 번째 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 용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위해서>로 대체된다 ;

2° 제 I 의 네 번째 항 이후, 다음의 기술들을 삽입 한다 :

< 협약은 년 간 총 텔레비전 서비스 시청자 중 평균 시청률이 2.5%를 초과하는 디지털 형식으로 전송되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위해서 주요 시청시간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들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액세스 되는 프로그램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III에서 용어 <실행을 위해> 이전에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실행을 위해>로 대체한다.

제36조

같은 법 제33-1조 이후에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제33-2조. CSA의 입장을 수용한 후, 콩세이유 데따의 포고는 CSA가 허가한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망에 의해 배포되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들을 규정 한다 :>

<1° 광고, 홈쇼핑 및 후원에 적용하는 규칙들 ;

<2° 프랑스 언어의 존중과 프랑스어 권에 적합한 규정들 ;

<2° 이 포고는 마찬가지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들의 대중적 배포를 위한 서비스들에 대해 규정 한다 :

< 3°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제작의 발전, 특히 독립 제작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작자들의 기여 ;

<4° 유럽 및 프랑스 원작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규정들.>

제37조

같은 법 제42절의 첫 번째 항에서 : <제30-5조가 언급한 서비스 제작자들 등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로 대체한다.

제38조

같은 법 제42-4조에서 용어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의>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로 대체된다.

제39조

같은 법 제42-7조의 두 번째 항에서 용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제작을 위해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의>는 삭제된다.

제40조

같은법 제II부의 제5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이 법에 규제를 받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및 텔레비전 서비스의 규정>

제41조

같은 법 제43-2조에서 용어 <프랑스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서비스들>은 용어 <프랑스에서 설립된 사업자의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들과 텔레비전 서비스들>로 대체된다.

제42조

같은 법 제43-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용어 <상영자>는 용어 <제작자>로 대체된다 ;

2° 첫 번째 항에서 용어 <텔레비전> 은 용어 <텔레비전 혹은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로 대체된다.

제43조

같은 법 제43-4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 한다 :

<제43-4조. 제43-3조가 정한 기준들 중에 어떤 것도 적용할 수 없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작자 혹은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프랑스의 감독권에 속하게 된다.

<1° 제작자들이 프랑스에 위치한 방송사에서 시작하는 위성과의 연결망을 이용할 경우 ;

<2° 유럽연합 회원국가나 유럽 경제권에 속해있는 다른 국가에 위치 해는 방송국에서 시작하는 연결망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사업체들이 프랑스에 귀속된 위성을 이용할 경우.>

제44조

같은 법 제43-6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제43-6조. 초국경적 텔레비전에 대한 1989년 5월 5일의 유럽 평의회(Conseil de l'Europe) 협약에 의해 규정된 기준들에 따라서, 그리고 유럽 공동체 비회원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 인정한 기준들에 따라서, 이 법은 프랑스의 감독 권한에 속한 제작자들의 텔레비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

같은 법 제II부의 제V장에서 제43-7조에서 43-10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제43-7조.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가의 관리 권한에 속한 텔레비전 서비스들 혹은 초국경적 텔레비전에 대한 1989년 5월 5일 유럽 평의회의 협약에 가입 한 다른 국가의 관리 권한에 속한 텔레비전 서비스들과 유럽 경제권에 포함된 텔레비전 서비스들은 사전 형식에 맞춤 없이 CSA가 배분하는 전파들을 이용하지 않는 망을 통해 방송이 될 수 있다.>

<제43-8조. CSA는 종종 다음의 조건들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럽 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의 감독권에 속해 있거나 유럽 경제권에 포함되어있는 텔레비전 서비스들의 재송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이전 12개월 동안에 2회 이상 미성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혹은 도덕적 성장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는 방송을 하였을 경우, 혹은 인종적, 성적, 종교적 그리고 국적을 이유로 하여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유발하는 방송을 하였을 경우 ;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재송신 회원국의 검토,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와 서비스에서 나타난 측정내용들과 해악들에 대한 조사결과 후, 엄중히 판정받은 위반 행위.

<CSA는 잠정적으로 초국경적 텔레비전의 유럽 평의회의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감독권에 속해있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재송신을 이 협약이 정한 조건들 속에서 중지시킬 수 있다.>

< 공세이유 데따의 포고는 이 조항의 적용조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 제43-9조. CSA는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가의 감독권에 속해있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들 혹은 유럽 경제권의 일부에 속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들이 다음의 사항들에 속하는 경우에 이의 재송신을 중지시킬 수 있다 :

< 1° 미성년자 보호, 인간의 존엄성 보호 혹은 인종, 성별, 종교 및 국적에 따른 증오의 조장에 대응한 싸움과 관련한 분야, 그리고 공공 보건의 보호, 소비자 보호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공공질서와 공공안전 및 예방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거나 나타내고 있는 서비스 ;

< 2°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에 합당한 평가를 하도록 요구한 후에 그리고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서 실시한 평가에 대한 검토 후에, 엄중히 판정이 내려진 위반 행위.

<공세이유 데따의 포고는 이 조항의 적용 조건들을 명시한다.

<제43-10. 프로그램 편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프랑스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나 텔레비전 서비스가 프랑스 규제체제에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에서 유럽 경제권의 어떤 곳에서 혹은 유럽 공동체의 다른 회원 국가에서 제작되었을 경우, 공세이유 데따의 포고가 정한 조건들에 따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에 적용되는 규칙들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한다. >

제46조

같은법 제7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첫 번째 항은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 된다 :

< 지적 소유권에 관한 법 규정들의 편파성 없이, 텔레비전 서비스에 의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방영은 두 번 이상의 중간 광고로 중단 될 수 없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나 단편물 그리고 시리즈물은 예외로 하여, 오직 30분 단위로 프로그램화하여 분할 편성의 경우만 작품의 중단이 가능하다>

2° 세 번째 항에서, 용어 <제44조에서 언급된 기업들 그리고 이용자의 일부가 지불한 가격에 의해 재정을 확충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들에 의해> 는 용어 <제44조에서 언급된 텔레비전 서비스와 텔레비전 영화 서비스에 의해>로 대체된다.

제4부. 영화 및 기타 예술과 관련한 규정들과 만화영화 산업

제47조

I. 헌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조건들 속에서, 정부는 명령(ordonnance)을 통해서 법적인 규정들을 조정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영화, 기타 예술 분야 및 이미지 산업과 관련 한 성문화된 혹은 관습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법(code)의 차원에서 재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요구에 따라 규정들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들 ;

2° 다음의 사항들을 위해 명칭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개정이 필요한 국립 영상원(CNC)과 관련한 것들 :

a) 문화부의 직접적인 권한 하에서, 그리고 개별차원에서 수행하는 특권적 공권력 및 문화부 산하 기관 하에서 국가의 관리자 신분으로 공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의무들을 구별하면서, 영화 및 기타 예술 분야에서 그리고 만화영화 산업에서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 의무를 실천하는 것

b) 특별히 행정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그 조직 및 역할을 개혁하는 것 ;

c) 재원과 지출을 그 역할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

d) 영화 및 기타 예술 그리고 만화영화 산업의 규제 정책에 따라 불법 행위의 조사 및 검토 체제를 실행하는 것, 즉 행정적 검열체제 및 형벌 체제를 실행하는 것 ;

3° 영화 및 기타 예술 그리고 만화영화 산업 활동 및 전문 활동과 관련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 :

a)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직업 활동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체제를 단순화하고 영상 공연 조직들의 제도화의 법률적 기반들을 적용하는 것 ;

b) 비 상업적 영상 공연 조직이나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들을 개선하는 것 ;

c)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작품 및 비디오로 만들어진 시청각 및 영화 작품의 방영 수익에 대한 통제와 관련한 규칙들, 즉 관련된 규제 체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4°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을 녹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시청각 및 영화 작품의 제작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5°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위해 영화, 기타 예술 및 만화영화 산업의 재정적 관계들 및 필요성들 :

a) 조세일반법의 제302bis KB조 와 제302bis KC조가 제시한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작자 및 배포들에 대한 세금을 CNC가 직접 담당 하도록 하는 것 ;

b) 영화 및 기타 예술에 대한 재정적 지원금의 배분 및 만화영화 산업의 일반적 조건들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

c) 몇몇 무관심한 주주들에게 영화 생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우선적인 할당 체제를 실현하는 것.

6° 2001년 11월 8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채택된 시청각 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유럽 협약의 제안 내용들과 더불어 영상 자료들의 관련 등록과 관련이 있는 유산에 관한 법 제 I 권의 제III부의 규정들을 확실히 적용할 필요성들.

II. 제 I 에서 제시한 명령(ordonnance)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제정되어야한다. 이 명령의 비준을 담고 있는 법안은 공개된 날로부터 3개월 째 마지막 날까지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제48조

I. 정부는 헌법 제38조에서 제시한 조건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규정들을 명령을 통해서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1° 집단적이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편성 협약의 교부 조건들과 관련이 있는 영화 배포에 대한 규제 조항들과 영화 상영 기관들의 프로그램 약정들 그리고 영화 중계자의 권한 확대 ;

2° 다양한 진입 권한을 주는 영화의 접근 형식들에 대한 협정 교부의 조건과 형식들 ;

3° 대중의 개인적 이용의 차원에 머무르는 비디오 형태나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의한 영화의 재현 권한의 중지 조건들 및 영화와 시청각 작품의 상영권의 중지 조건들

II. 제 I 이 제시한 명령은 이 법의 공포로부터 늦어도 8개월 전까지 제정되어야 한다. 이 명령의 비준을 담고 있는 법안은 공개한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째의 마지막 날까지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제5장. 다양하고, 전환적이며 최종적인 규정들

제49조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29-3항의 첫 번째 항은 다음의 문장들로 보완 된다 : <이것들은 CSA에 의해 정해진 조건들 속에서, 제28-1이 제시한 조건들에 따라서 지역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제29조, 제29-1조, 제30조 그리고 제30-1조를 적용함으로써 교부된 허가권의 개선에 대해 그리고 제28-3이 제시한 해당지역에서의 잠정적 허가권의 교부에 대해 그 실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위원회 의장은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제31조가 규정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0조

같은 법 제108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제108조. 제53조의 제 V 를 예외로 하고, 이 법은 왈리스(Wallis)와 퓨튀나(Futuna) 섬 그리고 프랑스 폴리네시아 (Polynésie française), 뉴벨 칼레도니 (Nouvelle-Calédonie)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땅(Terres australes) 그리고 남극 프랑스에서 적용할 수 있다.

< 마이오프(Mayotte), 생 바테레미(Saint-Barthélemy), 생 마땡(Saint-Martin), 생 삐에르 에 미케롱(Saint-Pierre-et-Miquelon), 왈리스(Wallis)섬과 퓨튀나(Futuna) 섬 그리고 프랑스 폴리네시아(Polynésie française), 누벨 칼레도니(Nouvelle-Calédonie) 그리고 오스티랄리아 땅(Terres australes) 그리고 남극 프랑스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에 대해 이 법의 해석은 지역적으로 적용 가능한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을 통한 해석으로 대체한다.

제51조

I. France 2, France 3, France 5 et RFO 사들의 모든 의무, 권리 및 생산물은 2009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되는 단일한 통합적 융합 법 집행의 틀 속에서 프랑스 텔레비전 회사로 이전된다.

가시적인 가치에서 실행되는 이 전환 규정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형식적 틀도 요구됨이 없이 관련된 방송사들의 해체와 프랑스 텔레비전으로 그 모든 유산을 이전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통합되는 방송사들이나 그 방송사들이 통제하는 기업들에 대해 프랑스 텔레비전에 의해 혹은 프랑스 텔레비전의 시각에서 결정한 모든 다른 협약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계약들의 전환 규정은 어떤 한편에서만 서지 않으며, 방송사들이 지고 있던 부채의 변제에 대한 어떤 조항도 개정이나 해약을 명시할 수 없다.

이 법을 적용하면서, 생산물, 권리 및 의무의 이전과 관련한 모든 활동들은 직간접적으로 어떤 권리 및 어떤 형태의 세금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제시하는 이 항의 규정들은 모든 규정들 혹은 반대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II. France 4가 명시한 회사의 모든 생산품, 권리 및 의무는 프랑스 텔레비전이 이 회사의 모든 자본을 수용 할 날짜로 부터 혹은 이 수용이 그 이전에 이루어 질 경우, 제 I에서 언급한 융합 합병과 동시에 프랑스 텔레비전으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전된다.

III. 국제 라디오 프랑스(RFI) 사의 모든 활동은 국가의 법률적 행위를 통해서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이전 된다.

제52조

I. 이 법에서 제시한 내용에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47-5의 첫 번째 항의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 어떠한 편향도 가짐 없이,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들의 사장들의 임기는 이 법의 실행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다.

II. 프랑스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랑스 각 회사의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CSA는 역량 있는 인재를 지명한다.

III. 공공분야의 민주화와 관련한 1983년 7월 26일 법 n° 83-675가 정하고 있는 3개월 기간 이내에 새로운 행정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질 때 까지 국제 라디오 프랑스(RFI)의 행정자문위원회는 이 법의 공포 이전에 만들어진 구조를 유지 한다.

제53조

I. 이 법의 공포 이전에 규정된 내용에서 그리고 이전에 교부되었던 사용권의 모든 반대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France 2, France 3, France 5, RFO 그리고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 44조의 제 I의 마지막 항의 적용에 따라 설립된 회사들의 해체와 관련하여, 국립 프로그램 사인 프랑스 텔레비전은 지상파 헤르츠 망에 의해 프로그램들을 송출하기 위해 이전에 이 회사들에게 교부된 무선 전파 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 무선 전파 재원이 교부된 회사들에는 우편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법 제L. 36-7조가 정하고 있는 조건들에 따라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전송하기 위해 우편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규제 처 (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동의

를 얻은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II. 해외 프랑스 시청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대한 국가의 역할의 이전과 관련해서, 국제 라디오 프랑스(RFI)는 해외 프랑스 시청각 담당 회사의 자회사로써 국립 프로그램사의 위치에서 전에 허용된 라디오 전파 재원의 이용권과 공공 서비스 사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속한다.

제54조

이법의 43조는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제55조

I. 이법 제20조의 제 I 의 규정들은 2009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적용된다.

같은 조항의 제II의 규정들은 2010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적용된다. 어쨌든 2009년에는 제 I 이 제시한 세금은 조세일반법 제287조의 제1이 언급한 포고와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 월별 혹은 분기별로 분할 징수한다. 이 징수 금액은 공개적 징수 의무사항들에 따라서 같은 법 제302 bis KG조의 제II에서 언급된 총액을 12회 혹은 4회로 분할하며, 2008년을 기준으로 1천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들에 대해 동일하게 약 3%를 적용한다.

II. 이법 제21조의 제 I 의 규정들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같은 조항 제II의 규정들은 2010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적용된다. 어쨌든 2009년에는 제 I 이 제시한 세금은 조세일반법 제287조의 제1이 언급한 포고와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 월별 혹은 분기별로 분할 징수한다. 이 징수 금액은 공개적 징수 의무사항들에 따라서 같은 법 제302 bis KH조의 제II에서 언급된 총액을 12회 혹은 4회로 분할하며, 2008년을 기준으로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약 0.9%를 적용한다.

제56조

제20조, 제21조 그리고 제55조와 제19조의 제 I 을 예외로, 이 법은 왈리스(Wallis) 섬, 퓨투나(Futuna)섬, 프랑스 폴리네시아(Polynésie française), 누벨 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 오스트랄리아 땅(Terres australes) 그리고 남극 프랑스에서 적용된다.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및 해외 시청각 담당 회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한 조직 법안의 국무회의 제출문

■ 제출 동기

이 조직 법안은 헌법 제13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및 해외 시청각 담당 회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을 보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과 1986년 9월 30일 법의 규정들을 적용하면서, 국립프로그램 사들의 사장들은 CSA의 명확한 입장을 청취할 뿐 만 아니라, 상하 양원의 문화담당 상임위원회가 헌법 제13조가 정한 조건들에 따라서 이 임명에 대하여 입장을 제시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및 프해외 시청각 담당 회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한 조직법 안

■ 단일 조항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을 담당하는 회사의 사장 임명은 헌법 제13조의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각 의회에 적합한 담당 조직은 문화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이다.